

의안번호	제 143 호
의 결 년 월 일	1997. 2. 28. (제 60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안 년 월 일	1997. 1. 24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/ . 24.

제출자 : 보은군수

☐ 제안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('95.12.19)으로,보건소법시행령이 지역보건법시행령('96.7.13)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보은군보건소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☐ 주요 골자

- 제1조중 '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'를 '지역보건법 제7조,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제8조'로 함.
- 제3조중 '보건소법 제6조'를 '지역보건법 제9조'로 함.

☐ 근거 법령

- 보건소법 제2조,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
- 지역보건법 제7조,제9조,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제8조

☐ 내 용

-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☐ 신.구조문 대비표(개정조례시 붙임) : 따로붙임

☐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자료 붙임

- 관계 법령발췌 : 따로붙임

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'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'를 '지역보건법 제7조,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내지, 제8조'로 한다.

제3조(업무)중 '보건소법 제6조'를 '지역보건법 제9조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 1 조 【목 적】 이 조례는 <u>보건소법</u> <u>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</u> 의하여 보은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 【목 적】 ---- <u>지역보건법</u> <u>제7조와 동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</u> <u>7조와 동시행령 8조-----</u> ----- -----.
제 3 조 【업 무】 보건소는 <u>보건소법</u> <u>제6조에</u>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	제 3 조 【업 무】 ---- <u>지역보건법</u> <u>제9조-----</u>.

관 계 법 령

보은군보건소조례

제정 (1963. 2. 1 조례 제 41호)
 개정 (1971. 9.21 조례 제 217호)
 개정 (1973. 6.18 조례 제 286호)
 개정 (1976. 1. 9 조례 제 373호)
 개정 (1976. 4.30 조례 제 394호)
 개정 (1977. 4.10 조례 제 459호)
 개정 (1982. 2.10 조례 제 717호)
 개정 (1982. 9.30 조례 제 761호)
 개정 (1984. 8.13 조례 제 886호)
 개정 (1985. 12.23 조례 제 938호)
 개정 (1986. 3.21 조례 제 954호)
 개정 (1987. 10.10 조례 제1026호)
 개정 (1993. 2.18 조례 제1371호)
 개정 (1994. 10.24 조례 제1405호)

제 1 조【목 적】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【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】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 3 조【업 무】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4 조【소장및 지소장】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.

②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.

1.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.

③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 다만,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 5 조【공 무 원】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 6 조【지소의 설치】 군수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 (1963. 2. 1 조례 제141호)

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1. 9. 21 조례 제 21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3. 6. 18 조례 제268호)

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6. 1. 9 조례 제373호)

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1982. 2. 10 조례 제717호)

①【시행일】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【폐지조례】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보건소수가조례 (조례 제 644호 1981. 2. 16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 (1982. 9. 30 조례 제761호)

①【시행일】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【다른 조례의 규정】 보은군 보건소 조례 제5조 제1항중 “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, 진료수가에 의하여”를 “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하여”로 하며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발표중 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난”을 삭제한다.

부 칙 (1984. 3. 13 조례 제88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5. 12. 23 조례 제938호)

①【시행일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【폐지조례】 보은군 보건지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③【경과조치】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보건지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1986. 3. 21 조례 제 954호)

이 조례는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7. 10. 10 조례 제102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3. 2. 18 조례 제1371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10. 24 조례 제1405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보은군 보건소 및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보 은 군 보 건 소	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91-3	보 은 읍 일 원
내 속 리 면 지 소	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	내 속 리 면 일 원
외 속 리 면 지 소	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	외 속 리 면 일 원
마 로 면 지 소	보은군 마로면 관기리	마 로 면 일 원
탄 부 면 지 소	보은군 탄부면 하장리	탄 부 면 일 원
삼 승 면 지 소	보은군 삼승면 원남리	삼 승 면 일 원
회 남 면 지 소	보은군 회남면 거교리	회 남 면 일 원
회 북 면 지 소	보은군 회북면 중앙리	회 북 면 일 원
내 북 면 지 소	보은군 내북면 창리	내 북 면 일 원
산 외 면 지 소	보은군 산외면 구티리	산 외 면 일 원

地 域 保 健 法

1995. 12. 29

保 健 福 祉 部

②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機關·團體등에 대하여 人力·技術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.

第 6 條(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)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·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·道 또는 市·郡·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.

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·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.

第 7 條(保健所의 설치) 保健所(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第 8 條(保健醫療院) ①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保健醫療院을 設置

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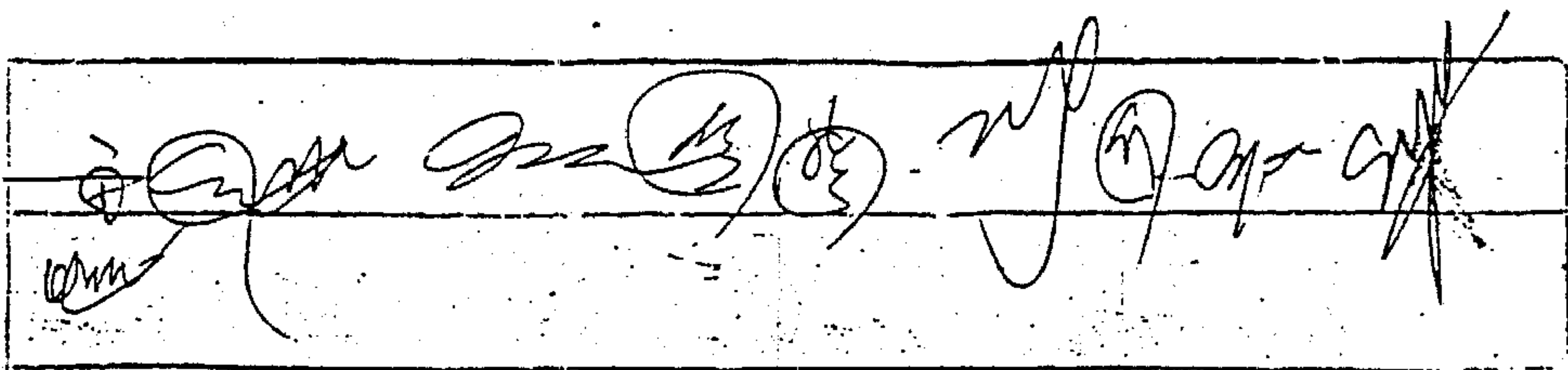
第9條(保健所の 業務)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 區域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.

1. 國民健康増進·保健敎育·口腔健康 및 營養改善事業
2. 傳染病의 豫防·관리 및 診療
3.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
4. 老人保健事業
5. 公衆衛生 및 食品衛生
6. 醫療人 및 醫療機關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
7. 醫療技士·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
사항
8. 應急醫療에 관한 사항
9. 農漁村등保健醫療를 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
師·保健診療員 및 保健診療所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
사항
10. 藥事に 관한 사항과 麻藥·向精神性醫藥品の 관리에 관
한 사항

11. 精神保健에 관한 사항
 12. 家庭·社會福祉施設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保健醫療事業
 13.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,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
 14.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에 관한 사항
 15. 障礙人の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
 16.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·增進 및 이를 위한 研究등에 관한 사업
- 第10條(保健支所の 設置)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の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の 支所(이하 “保健支所”라 한다)를 設置할 수 있다.
- 第11條(保健所の 組織) 保健所の 組織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地方自治法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다.
- 第12條(專門人力의 適正配置등) ①保健所에는 所長과 第9條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免許·資格

地域保健法施行令

1996. 7. 13.

A rectangular box containing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.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. Below the signature, there is a faint, circular official stamp or seal.

保 建 福 祉 部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)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사는 당해 시·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7조(보건소의 설치)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시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)·군·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.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건지소의 설치)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·면(보건소가 설치된 읍·면을 제외한다)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·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보건소의 조직기준)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·군·구의 인구규모, 지역특성, 보건 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③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)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·치무·약무·보건·간호·의료기술·식품 위생·영양·보건통계·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